성남창업센터(위례 창업지원주택) 입주기업 모집 공고

'창업하기 좋은 도시'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중인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23년 5월 2일 성남산업진흥원장

1

센터소개

성남창업센터(정글ON)

창업이라는 "정글"속에서 **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을 제시**하는 **창조적 커뮤니티 공간,**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

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

* 홈페이지 : www.snip.or.kr/jungleon

□ 센터개요



[센터 위치]



[건물 외부]

▶ 개 소 : 2021. 7월

▶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53 (위례 중앙초등학교 옆)

(성남위례(A2-15BL)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3601동 1층)

□ 공간구성

위례 창업지원주택

3601동 1층





[업무공간 1] [업무공간 2]

▶ 면 적 : 252.34㎡ / 76평

▶ 운영시간 : **평일** 09:00 ~ 21:00 ※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(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)

▶개방형 업무공간 16석 내외, 회의실, 탕비실

▶책상, 의자, 사물함 등 집기 제공 / 제조시설 입주 불가

□ 지원프로그램

▶ 업무공간	- 임대료, 관리법	비 무상제공
	※ 좌석수에 따른 입주관리비(보증금), 멤버십비 있음	
	멘토링	- 그룹멘토링, 상시멘토링,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
▶ 창업지원 프로그램	네트워크	-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과 네트워크
	사업화지원	- 사업화 자금 지원(기업당 5백만원 내외 지급)

2 모집개요

- □ 모집기간: ~ 2023. 5. 24(수), 17:00 까지
 - ※ 유의사항: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<u>마감일 1일 이전</u>에 <u>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</u>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. 마감시간 30분전에 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모집대상: (공고일 기준) 창업 5년 이내 기술(예비)창업기업
- □ 모집분야: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※ 특화분야: <u>스마트 헬스케어, 콘텐츠</u>
- □ 모집규모 : 총 5개사 내외 (1인석 ~ 4인석)
 - ※ 평가 결과에 따라 고순위 기업부터 입주 우선권 부여
 - *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다소 변동 가능
 - ※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예정

신청자격 및 입주조건

□ 신청자격

3

구 분	신청자격	비고	
예비창업자	▶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법인)이 없는 자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	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▶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- (개인) 사업자등록증상 '개업연월일' 기준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	제2조 2호」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	
지원 제외대상	 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(기업) ▶ 정부 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기 	· 자(기업)	

□ 입주개요

구 분	입주조건			
입주시기	▶ 2023. 7월 예정			
입주기간	▶ 입주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(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) ※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(정글ON) 및 타 기관 운영 중기부 지정 BI센터 입주 총량 최대 3년, 입주성과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2년 연장 가능 (중기부 지정 BI센터 확인) https://www.smes.go.kr/binet/incu/center/list.do			
입주비용	구 분 개방형 입주관리비(보증금) 좌석당 20만원 멤버십비 좌석당 2만원 / 월 ▶ 입주관리비는 시설 파손을 대비한 담보금으로 파손 물품 없을 경우 전액반납, 멤버십비 미반환 ▶ 입주관리비 및 멤버십비는 <u>입주 계약체결 시 일시불로 전액 납부</u>	화		
	[예시] (개방형/4인석): 총 176만원 - 입주관리비: 20만원 × 4인 = 80만원 ※ 퇴실시 반환 - 멤버십비: 2만원 × 4인 × 12개월 = 96만원			
의무사항 및 안내사항	【사업장 이전(등록)】 ▶ (예비창업자) 입주 후 2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신규 창업 필수 ▶ (창업기업) 입주 후 2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장 본사 이전 필수 【입주공간 인원 확보】 ▶ 계약 체결 시에 입주공간 내 근무인원 확보 예정인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간 내 근무인원 확보 의무 ▶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 -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 - 행위제한 및 퇴소 -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▶ 주차 지원 불가할 수 있음			

4

신청 및 선정절차

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

~ 5. 24(수)

(1차)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

6월 1주차

(2차) 발표심사 및 결과발표

6월 2~3주차

입주 계약체결

6월 말

 \Box

※ 입주: 2023. 7월

※ 단. 상기 일정은 진흥원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

 \Rightarrow

□ 서류평가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
□ 발표평가 : (1차) 서류평가 선정기업 대상 발표평가

□ 평가항목 : 창업자 및 팀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계획 적정성 등

□ 결과통보 : 각 심사결과 및 향후 일정은 개별 통보

□ 가점사항

- ① 성남위례(A2-15BL)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입주민 (5점)
- ② 벤처기업 인증 획득기업 (5점) ※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- ③ TIPS 선정기업 (7점)
- ④ VC, AC 등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) (5점)
- ⑤ VC, AC 등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) (3점)
- ※ ② ∼ ⑤번 항목은 중복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- ※ 증빙 미제출시 미인정
- ※ 서류평가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반영 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접수마감 : <u>~ 2023. 5. 24(수), 17:00</u> 까지

□ 접수방법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nip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□ 제출서류

계초 내리/어크트	법인기업	אורוטעד	예비창업자	
제출 서류(업로드) 법인기		개인기업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0	0	0	
②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0	0	×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0	×	×	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④ 국세, 지방세 납	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0	0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지	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0	0	×	
⑥ 사실증명 [*]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0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0	0	0	×
⑦ 가점사항(해당 기	업에 한해 제출)	0	0	×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0	0	0	

^{*} 사실증명은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 (발급경로) 국세청 홈텍스-신청/제출-신청업무-사실증명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- 상기 ① ~ ⑧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총 1개의 PDF파일로 생성
- 파일명 = "기업명"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업로드
- 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□ 문의처 :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

구 분	담 당 자	연 락 처
모집·선정	허정원 선임	☎ 031-782-3062
시설·공간	이주연 주임	☎ 031-759-9246

[첨부. 창업의 범위]

주 체		사업장소	사 례	창업여부
A 개인이	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조직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갑장소에서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 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 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위장변경
A H 0101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 법인이	갑장소에서	갑상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페어 아그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형태변경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을장소에서 ·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 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업종변경
A 7110101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 개인이 :	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 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을장소에서 ·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승계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 법인이	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 페어 아그	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	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A가 (개인)	을장소에서 ·	갑상소에서의 기손사업을 	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이전
			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창 업
		갑상소에서의 기존사업을 	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확장
			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업종추가

- 1.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%를 넘는 경우
- 2. "갑" 장소는 기존사업장, "을" 장소는 신규사업장
- 3. "갑" 장소와 "을"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
- 4. "B"법인은 "A"가 출자한 법인임
- 5. "기존 사업을 폐업하고"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